

즉, 개정된 법률조항이 소급적용하게 되는 것이다.(93헌바1 95. 7. 27참조)

헌법 불합치 결정은 단순 위헌결정과 달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취득세·등록세·재산세·공동시설세·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,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감안하여 일정기간의 여유기간을 두어 개선토록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

또한 심판대상 위임조항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입법자가 심판대상 위임조항을 위에서 밝힌 위헌이유에 맞추어 새로이 개정할 때까지 그 형식적 존속만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결정이고, 입법자가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는 법률을 개정하면 그것은 헌법재판소를 대신하여 합헌적 상태를 소급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되고, 법원,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렇게 합헌적인 개정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.

따라서 법률의 위임조항을 벗어나 규정하여 행한 지방세 부과처분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 할 수 있는 것이므로(헌재 95헌바1, '95. 11. 30 참조)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방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효력이 중지된 법률의 효력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대상 에 대한 과표의 효력은 지방세법 개정후에는 소급하여 환원되는 것이다.

### <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지방세법 개정 전 지방세 과표 운용대책>

#### <기본방향>

- 최단시간내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지방세 과표에 관한 입법적 보완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,
- 지방세법 개정전까지는 납세자의 조세협력과 행정지도를 통하여 지방세 과표를 합리적으로 운영

[지방세법 개정전]